###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8.3.22.]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3.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에게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4720호, 2017. 3. 21. 공포, 2018. 3. 22. 시행)됨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및 검사방법 등을 정하고,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에 대한 교육의 내용 및 주기 등을 정하는 한편, 주차장 주차구획의 기준을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주차장 주차구획 기준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

차량 크기의 확대 및 문 열림 여유 폭 등을 고려하여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장으로서 일반형의 경우 너비 최소 기준을 2.3미터에서 2.5미터로 하는 등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장의 주차구획 최소 기준을 확대함.

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의 내용 등(안 제16조의15)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 주기 및 시간을 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고의 범위(안 제16조의19 신설)

기계식주차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고,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가 전복 또는 추락한 사고가 난 경우에 정밀안전검사를 받도 록 함.

라.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절차 및 방법(안 제16조의20 신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밀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합격여부 및 항목별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그 검사결과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함.

마.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설비 기준 등 마련(안 제16조의21, 별표 1 및 별표 2 신설)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갖추어야 할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검사기기 기준을 정하는 한편, 기술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규·정기·임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교육과목, 시간 및 내용을 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5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6미터 이상	5.2미터 이상
장애인전묨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제6조제1항제12호다목 중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9(검사비용 등) 법 제19조의6에 따른 검사기관, 법 제19조의12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및 법 제19조의2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법 제19조의11(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비용을 정하려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의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6조의15(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① 법 제19조의20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②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 2.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
  - 3. 기계식주차장치 운행 및 취급
  - 4. 화재 및 고장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치방법
  - 5.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 ③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3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고,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의 금액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의1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0제3항"을 "법 제19조의20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호 중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조작할 것"으로 한다.

제16조의17제1항 중 "법 제19조의20제3항에 따라"를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 제16조의19 및 제16조의20을 각각 제16조의22 및 제16조의23으로 하고, 제16조의19부터 제16조의21까 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19(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사유) 법 제19조의22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 2.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 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한 사고
  - 3.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가 전복 또는 추락한 사고
- 제16조의20(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19조의22제4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12조의13에 따 른 정밀안전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 및 항목별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불합격 통보를 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검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여부 및 해당 항목 검사결 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불합격 항목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합격한 항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할 때 해당 기계 식주차장관리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 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16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① 법 제19조의22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대 행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표 1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검사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신규교육: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으로 처음 선임될 때 받아야 하는 교육
  - 2. 정기교육: 신규교육 후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 3. 임시교육: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③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의22(종전의 제16조의19)제1항 중 "법 제19조의22제1항"을 "법 제19조의23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별표"를 "별표 3"로 한다.

별표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10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주차장의 주차구획 기준 확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주차구획이 건축물의 기둥과 벽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위치하여 주차구획의 확대가 명백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주차구획에 한하여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2]

###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기준(제16조의21조제3항 관련)

### 1. 신규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	16시간 이상	· 주차장법령 · 건축법령 및 소방법령 · 산업안전설비기준 등 관련 고시
공통	기계식주차장 검사 기기	16시간 이상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기계식주차장 정 밀안전검사실무	80시간 이상	검사실습 및 행정관리요령
	기계식주차장 안 전도심사실무	40시간 이상	심사실습 및 행정관리요령
기계	기계공학	8시간 이상	재료역학, 구조역학, 기계설계학 등
전기	전기공학	8시간 이상	회로이론, 제어이론 등

### 2. 정기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	4시간 이상	· 주차장법령 · 건축법령 및 소방법령 · 산업안전설비기준 등 관련 고시
공통	기계식주차장 검사 기기	4시간 이상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기계식주차장 정 밀안전검사실무	8시간 이상	검사실습 및 행정관리요령
	기계식주차장 안 전도심사실무	4시간 이상	심사실습 및 행정관리요령
기계	기계공학	2시간 이상	재료역학, 구조역학, 기계설계학 등
전기	전기공학	2시간 이상	회로이론, 제어이론 등

### 3. 임시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개정법령	4시간 이상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 및 적용 실무

비고: 임시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별지 제8호의8서식]

## 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 <mark>명</mark>	②생년월일		
	③주소	<ul><li>④전화번호</li></ul>		
⑤검사의		' 검사 [ ], 정밀안전검사 [	1	
	⑥제작사	⑦전화번호		
	⑧인증번호	③명칭	③명칭	
주차장치	⑩종류 및 방식	1		
	⑪보수사	⑩전화번호		
⑬설치장:	<u></u>	<u></u>		
⑭기계식	주차장의 직전검사일			
	·장법」 제 19조의9제2항, 제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		시행규칙 제16조의8제1항, 제16조	
			년 윌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î	검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 첨부서류(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사용검사의 경우만 첨부하며, 「주 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도심사 신청 시 제출된 주의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와이어로프·체인 시험성적서 4, 제동기 시험성적서 2, 전동기 시험성적서 5, 운반기 계량증명서 한 금액 3, 감속기 시험성적서 6, 설치장소 약도			
		유의사항	1°	
	시 주의사항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다.	

- ②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②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란은 기계식주차장치 제작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B)·(B)·(S)라은 안전도인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 [별지 제8호의9서식]

#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확인증번호(인증번호):

검사구분 : 사용검사[ ], 정기검사[ ], 정밀안전검사[ ]

관리자 성명 :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호기)

제작사(보수사):

설치장소 : 검 사 일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유효기간은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한정한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

100mm × 70mm (보존용지(1종) 120g/㎡)

#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표지

- 1. 종류 및 방식 :
- 2. 명칭 :
- 3. 인증번호 :
- 4. 제작자 등 성명 :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5. 관리자의 성명 :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6. 설치장소 :
- 7. 사용금지 사유 :
- □ 사용검사 불합격, □ 정기검사 불합격, □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 8. 사용금지일:

「주차장법」 제19조의10제1항, 제19조의2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5항, 제16조의20제5항에 따라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하며, 위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할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